

유엔해양법협약 40주년과 극지: 기후변화에의 대응 플랫폼으로서 UNCLOS의 역할과 타 극지구범과의 협력가능성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서용(mahlerchung@gmail.com)
고려대학교 법학부 박사 김민경(mindy7535@gmail.com)

필자의 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CLOS)은 처음으로 해양법에 대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였다. 일부 조항은 1958년 협약의 조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하여 단순히 국제관습법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 외에 많은 조항들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UNCLOS는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 및 공해의 범위를 최종적으로 기술하고 그 한계를 제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해양 오염, 생물자원의 보존, 분쟁 해결 및 심해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을 추가하였다. 즉, 해양법을 명확히 하고 발전시킨 것은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과임이 틀림없다. 2022년은 UNCLOS가 채택된 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40년이 지난 지금, 약 168개국의 당사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1994년에 발효되어, 해양의 준거법으로 받아들여지고 1982년 당시 새롭게 도입된 규범 및 규칙들도 현재는 국제관습법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협약 당사국이 아닌 미국도 협약의 내용들이 국제관습법화되었다고 보고 협약의 정의를 바탕으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에 대한 UNCLOS 체제를 수용하고 있다. 본 원고는 올해로 UNCLOS 채택 40주년을 맞아 동 협약과 남북극 규범과의 협력가능성을 모색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I. 서론
- II. 기후변화와 유엔해양법협약
- III. 유엔해양법협약과 북극
- IV. 유엔해양법협약과 남극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I 서론

오늘날 UNCLOS는 국제법의 발전과 평화, 안보, 협력, 국가 간의 우호 관계 증진, 해양과 바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서 근본적인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협약 채택 이후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지난 40년간 UNCLOS는 해양 관할수역, 통항권, 해양 환경 보호, 해양 과학 조사, 분쟁 해결 등에서 박차를 가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 40년 동안 인간의 활동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다. 예컨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면에서 해양을 계속해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Patricia Birnie와 Alan Boyle 교수가 인정했듯이 UNCLOS는 현대 국제환경법의 근간을 형성한 중요한 국제협약의 하나이다.¹⁾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기름 유출과 같은 환경피해와 같이 명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결하는 데 있어 눈에 보이는 영향만이 우선순위로

다뤄져서는 안 될 것이다. UNCLOS 채택 후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급속하게 빨라진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생태계가 다각도로 위협받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UNCLOS가 얼마만큼 잘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이와 관련 UNCLOS 제234조가 극지에서 어떻게 도전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UNCLOS가 대두되는 상황에 유용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극지방은 특히 연평균 기온의 작은 상승에도 민감하며, 세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민감한 변화를 보인다. 남극은 지난 50년 동안 지구에서 가장 빠르게 온난화된 지역 중 하나이다.²⁾

이러한 온난화는 육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극해에서도 관찰된다. 남극의 온난화는 생태계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야기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남극의 이러한 현실과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은 또 다른 극지 지역인 북극이다.

II 기후변화와 유엔해양법협약

기후변화는 종종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로 설명된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의 경우 셀 수 없이 많은 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일부 국가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 해양법은 기후변화, 종의 멸종, 남획 및 해빙으로 인한 북극 항로의 이용가능성 등 최근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기존 육지 영토를 침수시켜 주권과 천연 자원에 대한 접근의 복잡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해수면 상승은 또한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영향과 함께 기존 해양 구역의 경계를 변화시킬 것으로도 예상된다. 북극의 만년설이 녹으면서 북서항로와 같은 항로가 개방되는 것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소송은 국제 기후변화협약 등에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국내법적 영역에 크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

또는 파리협정과 같은 기후변화 관련 조약 등과는 달리 UNCLOS에는 강제 구속력이 있는 제3자 분쟁 해결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UNCLOS는 해양문제를 다루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UNCLOS에는 해양 환경에 해를 끼치는 모든 형태의 오염을 규제하고 따라서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를 포괄하는 규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UNCLOS에 수립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의 적용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장을 끌어들이 수도 있을 것이다.

(1) 기후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해양문제를 해결하기에 UNCLOS는 충분한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및 산성화의 영향과 결과를 다루는 데 있어 UNCLOS는 분명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UNCLOS는 그 자체 내에서 다른 문서들과의 보완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UNCLOS의 제192조³⁾와 제194조⁴⁾와 관련하여 제1조의 해양 오

1) P. Birnie and A.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21, p.348.
2) Discovering Anatarctica, <https://discoveringantarctica.org.uk/challenges/sustainability/impacts-of-climate-change/> 참조. 2022. 7. 15. 방문.
3)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제192조는 각국은 해양환경 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4)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제194조는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염 정의를 살펴보면 기후변화는 명백한 해양 오염을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UNCLOS 12부(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의 의무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및 표준 등을 고려하여 읽어야 한다. 예컨대 UNFCCC 및 파리협정은 UNCLOS 제212조⁵⁾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이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UNCLOS의 12부와 관련된 환경 보호의 일례로 IMO에서 제정한 극지해역 운항선박규정(이하, Polar Code)을 살펴볼 수 있다.⁶⁾

Polar Code는 국제 해운의 영향을 다루기 위해 채택되었지만 간접적으로 취약한 생태계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고 있다. Polar Code는 UNCLOS 제211조에 따라 환경 보호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 규칙 및 표준'에 해당한다. IMO가 지정한 특별민감해역 (Particularly Sensitive Sea Area: PSSA)은 회귀하고 취약한 생태계와 관련된 UNCLOS 제194조 5항의 의무와도 연결이 된다. 해양생태구역(Marine Protected Area, 이하 MPA)의 설정은 해양 생태계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40년 동안 UNCLOS는 해양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잘 주도해 왔다. 하지만 계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대두되는 해양문제를 총괄하기 위한 방책으로 UNCLOS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현재 및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UNCLOS 외의 해양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있을 것이다.⁷⁾ 그러나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UNCLOS 내에서 외부 규칙 및 표준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UNCLOS는 그에 적용될 수 있는 수많은 의무를 포함하고 있음을 UNCLOS 조항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UNCLOS 15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통하여 기후 변화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소송은 어느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신청자가 패소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국제 소송은 승소든 패소는 그 판결의 결과로 인해 당사국들에는 새로운 행위기준으로 작용하므로 UNCLOS 회원국들에 의무이행의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송 가능한 상황으로

UNCLOS 오염 통제 의무 미준수, UNCLOS 요구에 따른 비협조, UNCLOS 의무 위반으로 인한 연안 국가의 피해 등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UNCLOS 관련 회원국들의 의무는 협약 제192조, 제194조, 제207조 및 제212조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07조와 제212조는 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을 채택할 때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표준, 권장 관행 및 절차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기준은 파리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으므로 결국 UNCLOS는 각국이 파리협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파리협정의 맥락에 따라 당사자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이다.

해양과 관련한 기후변화 문제가 실제 UNCLOS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인지, 아니면 UNFCCC 관련 문제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인 준거법 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⁸⁾ 두 협약 모두에 분쟁해결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UNFCCC에는 강제적 분쟁해결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UNCLOS 분쟁해결제도도 꽤 유용한 문제 해결 수단처럼 보인다. 따라서 UNCLOS 사건으로 다루는 경우 UNCLOS 규정에 따른 법원이거나 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을 갖게 된다. 파리협정에 의거하여 UNCLOS의 위반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UNCLOS 12부의 해석에 따른 것이다. UNCLOS 12부의 의무는 대세적(erga omnes)이므로 모든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⁹⁾ 따라서 어느 국가가 UNCLOS상의 기후변화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다면 UNCLOS 15부는 해당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강제적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을 국제 법원이나 재판소에 회부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상황에서 UNCLOS에 의한 기후변화 관련 사건에서는 정치적 및 기타 이유로 소송 제기를 원치 않는 국가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인정되는 추세이다.¹⁰⁾

III 유엔해양법협약과 북극

(1) 유엔해양법협약의 북극에서의 적용 현황

UNCLOS는 공유 해양 자원을 관리하고 해양 관련 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합의의 결과이다. 북극 국가들은 UNCLOS를 기준으로 법률 및 후속 협정을 채택하고 북극 지역 거버넌스의 기반을 형성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운, 석유가스 채굴 가능성, 관광 및 어업활동의 증가가 가능해지는 것은 북극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아이러니다.

일부는 북극이 소위 '무법' 지역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첫째, 북극해에서 UNCLOS는 해양경계와 법적 권리 및 책임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한 틀을 제공한다. UNCLOS는 다양한 해상 지역에서 상업 및 군용 선박과 항공기에 대한 항해의 권리와 자유를 규정하며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극 연안 5개국의 영해에 대한 한계와 적용 가능한 규칙을 설명한다.¹¹⁾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의 한계 및 그 지역을 규율하는 규칙을 명시함으로써 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다룬다.¹²⁾ 그리고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외부 한계를 설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질학적 기준을 제공한다.¹³⁾ 이는 오늘날 북극 연안 국가들이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계까지 각자의 대륙붕을 확장하려고 함에 따라 큰 관심 주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협약 당사국, 즉 미국을 제외한 다른 4개 북극해 연안국에 대해 UNCLOS는 이러한 외부 한계에 대한 국제적 승인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¹⁴⁾ 또한 연안 국가의 해양 청구가 중복되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¹⁵⁾ 마지막으로 UNCLOS는 북극의 해양 과학 조사에 관한 규칙을 제공하고 해양 환경 보호와 관련하여 연안 국가, 기국 및 항구 국가 간의 각각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¹⁶⁾

북극권 국가들은 또한 현행법적 체계가 탄화수소가 풍부한 북극 해역에 대한 효과적인 주권적 권리 행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¹⁷⁾ UNCLOS 6부에서는 연안국의 천연 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통제의 경계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대륙붕은 대륙 변두리의 바깥쪽 가장 자리(최대 350해리) 또는 200해리 중 큰 쪽까지 확장된다.¹⁸⁾ 영해의 폭이 측정되는 기준선에서 대륙 변두리의 바깥쪽 가장자리가 200해리를 넘어 확장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부담은 연안 국가에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요약된 특정 정보를 이 협약 제2부 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이하, CLCS)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CLCS는 대륙붕의 외측 한계 설정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안국에 권고를 하고, 이러한 권고를 기초로 연안국이 확장한 대륙붕의 한계는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¹⁹⁾

지금까지 북극 국가들의 목표는 탄화수소 개발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면서 환경 보호에 협력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⁰⁾ 지역 차원에서 북극 국가들은 협력 목표를 반복적으로 선언했으며 오타와 선언을 통해 1996년 북극 국가의 주요 지역 조정 기구인 북극이사회를 설립했다.²¹⁾ 북극이사회는 북극 국가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포럼의 역할을 하지만 규칙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진정한 국제기구는 아니다.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북극이사회에서 합의된 조약은 북극 국가 간에 적용된다. 실제로 몇 개의 조약은 북극이사회 8개국 회원국 간에 체결되었다. 첫째, 2011년 북극 국가들은 대응 책임을 분담하고 협력을 구조화하는 수색 및 구조 조약을 채택하였다.²²⁾ 본 조약 채택 이후 2013년에 북극 국가들은 북극 오염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조약에 서명하였다.²³⁾ 과학적 연구 및 협력에 중점을 둔 세 번

5)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제212조는 대기에 의한 또는 대기를 통한 오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6) Catherine Redgwell, 'Treaty Evolution, Adaptation and Change: Is the LOSC 'enough' to Address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ume 34, Issue 3, 2019, pp. 440-457.

7) Ibid., pp. 440-457.

8) Meinhard Doelle, "Climate Change and the Use of the Dispute Settlement Regime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2006, pp. 25-27.

9) Natalie Klein, "Adapting UNCLOS Dispute Settlement to address Climate Change", in Research Handbook on Climate Change, Oceans and Coasts, Research Handbooks in Climate Law series, 2020.

10) Ibid.

11) 유엔해양법협약 제2부.

12) 유엔해양법협약 제56조 및 제77조.

13) 유엔해양법협약 제6부.

14) Bellinger, John B. "The United States and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stitute for Legal Research: Berkeley, CA, 2008, p. 12.

15)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

16) 유엔해양법협약 제13부.

17) Rice, Kristen. "Freezing to Heat the Future: Streamlining the Planning and Monitoring of Arctic Hydrocarbon Development." Colorado Natural Resources, Energy &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24, No. 2, Summer 2013, pp. 391-418.

18)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1항.

19)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8항.

20) 북극 자원개발 현황과 과제는?,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22> 참조. 2022.8.1 방문.

21)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ctic Council, Ottawa, Canada, 1996,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nternational-relations-relations-internationales/arctic-arctique/declaration_ac-declaration_ca.aspx?lang=eng 참조. 2022.8.1. 방문. 지역 차원에서 북극 국가들은 협력 목표를 반복적으로 선언했으며 오타와 선언을 통해 1996년 북극 국가의 주요 지역 조정 기구인 북극이사회를 설립했다. 오타와 선언은 북극 원주민 공동체 및 기타 북극 주민의 참여와 함께 북극 국가 간의 협력, 조정 및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수단을 제공하는바, 특히 북극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호 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2)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2011.

23) Agreement on Cooperation on Marine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Arctic, 2013.

째 조약이 2017년 5월에 서명되었다.²⁴⁾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북극 개방에 관심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에서 옵서버 자격을 갖고 있지만 정회원은 아니다. 2008년에는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연방, 미국 등 북극의 5개 주요 국가가 일련의 통일된 정책 목표를 주장하는 일루리샛(Ilulissat) 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현재의 법적 틀에 대한 약속과 “북극해를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포괄적인 국제법 체제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선언하며 독특한 북극 생태계를 보호하는 북극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그리고 북극 개발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만들기 위한 협력적 접근에 대한 약속을 명하였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²⁵⁾

실제로 UNCLOS는 국제 사회와 국제기구가 협력 행동을 하기 위한 틀을 만들거나 최소한 비협조적인 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반영하고 있다. 당사국들은 해양문제에 대한 분쟁을 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합법적인 틀로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는 UNCLOS를 널리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⁶⁾ 최근 경향은 북극 지역에서의 인간 활동이 가까운 장래에 계속 증가할 것임을 보여준다.²⁷⁾ 이는 북극에서의 새로운 보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²⁸⁾ 그러나 기후변화로 급변하는 북극에서는 그 어느 나라도 혼자서 변화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고 이에 따른 회복력과 역량을 구축하려면 집단적 접근이 필요한 비²⁹⁾, 유엔해양법협약의 조항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틀을 제공한다.

(2)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한 일부 다른 시각

현 흐름과 다르게 일부 전문가들은 국가가 UNCLOS를 포기하고 북극에서의 새로운 법적 체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한다. 즉, UNCLOS가 급속한 온난화와 접근 가능한 북극의 미래를 위한 틀로서 얼마나 유용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다.³⁰⁾ 현재의 형태로는 기후변화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북극 환경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협약이 이러한 목적에 전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이유이다. 또한, 이 협약이 해양 경계와 확장된 대륙붕 소유권 주장의 결정을 복잡하게 하고 잠재적으로 북극 해운 및 자원 활동이 미래에 어떻게 관리될 것인지에 대한 갈등을 허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³¹⁾

1982년 UNCLOS 채택 당시, 북극에 대한 조항은 캐나다, 소련, 미국의 요청으로 막바지에 추가되었다. 사실 대부분의 비북극 연안 국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심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자제하고, ‘북극 거래’를 협상했다.³²⁾ 그 결과 전 세계의 얼음으로 덮인 해역이 연안 국가의 특별법적 체제에 대한 적용을 받는 제234조가 포함되었다. UNCLOS가 북극에 대한 특수성 부족에도 불구하고 제234조를 포함하는 것은 실제로 UNCLOS 자체가 북극의 유일한 틀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한다.³³⁾ 오히려 이는 해운 및 자원 관리와 같은 해양 활동의 수행을 함께 관리하는 지역적으로 소집된 다른 협정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³⁴⁾ 따라서 북극에 적용되는 해양법의 정신은 기후변화가 제기할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다.

먼저 얼음으로 덮인 지역에 관한 UNCLOS의 모호성으로 인해 협약이 북극에서의 해운을 규제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³⁵⁾ 특히, 제234조에서 “특히 혹독한 기후 조건”, “연중 대부분” 및 “항행에 대한 장애 또는 예외적 위험”이라는 문구는 실제로 “얼음으로 덮인 지역”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극 국가들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러시아와 캐나다는 제234조를 각각 북동항로와 북서항로에 대한 관할권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한다는 주장이다. 그들의 입장은 항행의 자유 원칙과 충돌하며, 특히 북극해의 공해는 이러한 신흥 해상 루트를 포함하여 연안국들의 영해 또는 EEZ를 통해 항해해야만 접근할 수 있고 UNCLOS 제234조에

따르면 심지어 북극 연안 국가들의 경우에도 북극해에 진입하고 인접 바다에서 기동하는 방법이 제한될 것이라고 한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얼음으로 덮인 지역의 영속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제234조의 범위가 북극 항로를 따라 덮인 얼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³⁶⁾ 특히,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될수록 북동항로 및 북서항로와 관련하여 연안 국가와 접한 다른 해양 지역이 여전히 얼음으로 덮인 지역으로 정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의 여지가 있음은 사실이다.³⁷⁾

두 번째로는 기후변화가 현재 CLCS에서의 역할 중 하나인 북극에서의 확장된 대륙붕을 결정하는 방법을 복잡하게 한다고 주장한다.³⁸⁾ 북극에서는 얼음이 덮여 있어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학 및 기술 데이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미국을 제외한 모든 연안국들과 아이슬란드는 CLCS에 자국의 대륙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는 이미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았고 대부분 인접 해안 국가들은 각자의 해양 경계를 결정한 상황이다. 그러나 러시아(2015), 캐나다(2019), 덴마크(2014)의 주장은 북극점을 중심으로 일정 부분 면적이 중첩된다. 따라서 앞으로 얼음의 범위가 계속 감소하게 될 경우, 이미 해결된 청구를 다시 검토하고 합의된 설명을 잠재적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⁹⁾ CLCS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한 해양 경계는 UNCLOS에 따라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북극 얼음이 줄어들며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상황은 이 지역의 연안 국가가 이 규정을 회피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확장된 대륙붕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CLCS의 유용성과 UNCLOS의 기본 원칙에 대한 우려도 있다.⁴⁰⁾ UNCLOS는 합법적인 대륙붕 관할권에 대한 중독 청구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했지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대륙붕 묘사를 기반으로 해양 경계를 결정하는 것은 관련 국가에 맡겨져 있다. 2008년 일루리샛 선언은 북극에서 중복되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해양법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북극권 5개 국가들의 약속을 확인했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이 약속의 약화를 보여주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⁴¹⁾ 이러한 측면에서 UNCLOS가 기후변화의 진통 속에서 북극 환경을

다들 준비가 덜 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일부 정책 관계자와 학자들은 국가가 UNCLOS를 포기하고 새로운 법적 체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조치는 UNCLOS가 제공하는 기존 법적 규범 체계의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UNCLOS를 포기하는 것은 법규범에 기반한 현재의 북극상황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잠재적인 안보 문제를 제기할 뿐이다.⁴²⁾ 또한 새로운 북극법의 공식화, 채택 및 이행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⁴³⁾ UNCLOS는 지역별 조약이 아니다. 현재 회원국만 168개국이다. UNCLOS는 처음 발효에 필요한 서명 수를 얻는 데 10년 이상이 걸렸다. 변화하는 북극을 보호하기 위해 UNCLOS를 개정 및 수정하는 것은 회원국들이 방대한 문서의 상당 부분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남극조약(Antarctic Treaty: ATS) 스타일의 포괄적인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북극에는 적합하지 않다.⁴⁴⁾ 첫째, 이미 북극에서는 석유 및 가스 생산에 많은 투자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과학 보호 구역으로 설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극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5개 연안 국가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고 선언한 바 있다. 나아가 절대적인 주권 기관이 없는 국가 간에 그러한 합의를 구축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오늘날 석유의 정치적 힘과 결부된 막대한 경제적 부를 고려하면, 일부 사람들은 UNCLOS를 포기하는 것이 북극 영토 분쟁에 대한 군사적 해결책을 장려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위험마저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⁵⁾ 실제로 UNCLOS는 북극 거버넌스에 필요한 연안 국가 및 기타 국가에 대한 명확한 권리와 책임을 설정하고 있다. UNCLOS의 일반 조항이 북극의 환경 및 선박 등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 UNCLOS는 연안 국가가 선박을 추가로 규제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예컨대, IMO의 Polar Code은 이 지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시작했다.

24) Agreement on Enhancing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operation, 2017.

25) The Ilulissat Declaration, Arctic Ocean Conference, Ilulissat, Greenland, 2008, <https://arcticportal.org/images/stories/pdf/Ilulissat-declaration.pdf> 참조, 2022.8.1. 방문.

26) Carlson, Jon D., Christopher Hubach, Joseph Long, Kellen Minteer, and Shane Young. "Scramble for the Arctic: Layered Sovereignty, UNCLOS, and Competing Maritime Territorial Claims."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3, No. 2, Summer–Fall 2013, pp. 21–43.

27) Bunker, Wayne M. U.S. Arctic Policy: Climate Change, UNCLOS and Strategic Opportunity. U.S. Army War College: Carlisle, PA, March 22, 2012, p. 24.

28) Ibid., p. 24.10) Ibid.

29)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rctic Imperatives Reinforcing U.S. Strategy on America's Fourth Coast.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ashington, D.C., March 2017, p. 84.

30) Georgetown Security Studies Review: UNCLOS in the Arctic: A treaty for Warmer Waters

31) Ibid.

32) 김민경, “북극해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북극해의 이용과 환경보호 및 보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 44. 해당 조항은 최종적으로 미국과 캐나다간 절충을 통해 확정되었다. 미국은 연안국이 독자적으로 채택한 법령을 결빙해역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캐나다 측에 양보하고 통과 통항제도에 대한 캐나다의 목인을 확보하였던 것이다.

33) Supra note 30.

34) Ibid.

35) Ibid.

36) 김민경, Supra note 32, p. 53.

37) Ibid., p. 53.

38) Supra note 30.

39) Ibid.

40) Ibid.

41) Ibid. 특히,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은 북극 군사력 증강과 함께 최근 다시 제출한 주장에 대한 CLCS의 권고에 러시아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42) 김민경, Supra note 32, pp. 212–221.

43) Ibid., pp. 212–221.

44) 김민경, Supra note 32, pp. 208–212.

45) Wilder, Meagan P. "Who Gets the Oil?: Arctic Energy Exploration in Uncertain Waters and the Need for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2, No. 2 (2009–2010): 505–544.

(3) 북극에서의 변화가 우리나라에 갖는 함의

한국은 2013년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국가로 참가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 우리는 현재 발효 중인 다양한 다자조약의 틀 속에서 당사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찾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북극 관련 우리의 역할은 북극이사회를 통한 다자협력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북극이사회의 제도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향후 북극만을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다자협력체제가 구축되는 경우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북극의 경우 남극과 달리 통일된 국제조약이 없고 UNCLOS에 따른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 바, 북극해 진출을 위해서는 연안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북극해지역의 자원개발이나 해상운송 등 북극해의 상업적 이용과 관련해서는 북극 연안국들과의 양자적 협력 관계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IV 유엔해양법협약과 남극

(1)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남극조약의 적합성

남극대륙 서쪽의 상층 해수 온도는 1955년 이래로 1°C 이상 증가했다.⁴⁶⁾ 남극대륙의 서해안은 전 세계 다른 해양보다 더 빠르게 온난화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남극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미래의 기후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정책 입안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⁴⁹⁾

남극의 온난화는 물리적 및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펭귄 서식지의 분포는 해빙 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달라졌으며 남극해의 남서부 대서양 부분에서 남극 크릴새우의 개체수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해빙 면적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⁵⁰⁾ 남극의 빙하 역시 면적이 줄어들었으며 일부는 완전히 붕괴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겠다. 남극조약은 이러한 남극에서의 변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할까?

1959년에 체결된 남극 조약이 올해로 63주년을 맞았다. 냉전 중 남극에 이익을 가진 12개국이 협상한 이 조약은 대륙 전체를 지배하는 단일 조약의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그밖에도 북극해 대륙붕 확장과 관련한 북극해 연안국들의 입장과 CLCS의 평가를 잘 관찰하여 우리에게 현안인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확정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북극해 심해저에 대한 개발 가능성에도 주목하여 국제해저기구(이하, ISA)에서의 북극해 관련 논의에도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⁴⁶⁾

이러한 관점에서 북극에서 우리의 역할을 증진하고 동시에 북극해에 대한 국제법규범체계 형성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론의 하나로 '아시아-태평양 북극지역위원회'의 창설방안⁴⁷⁾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극해를 둘러싼 현상을 해결하는 방법론이 결국은 국제법규범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규범체계의 형성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북극해 연안국은 물론 비북극해 연안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영구 인구가 없는 대륙에 대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이기도 하다. 남극조약은 매우 짧고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조항에는 과학적 연구의 자유 증진, 평화적 목적으로만 대륙 사용, 군사 활동, 핵 실험 및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금지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 조약은 지금과는 매우 다른 시대의 다른 상황에서 이뤄진 협상의 결과이고, 최근 수십 년 동안 남극 대륙과 관련된 환경, 자원 및 지정학적 분쟁이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기후변화와 같은 전 지구적인 도전 과제에 대응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조약의 가장 중요한 조항은 남극의 영토 주권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제4조이다. 남극에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청구자에게는 남극조약 제4조가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기존 주장을 확대하는 데 제한을 가한다. 남극조약은 또한 대륙의 영토 관할권에 대한 청구인 간의 모든 분쟁을 동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약 60여 년 동안 때때로 긴장도 있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와 영국은 대륙의 영토에 대해 중복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인근 포클랜드(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분쟁이

지속될 경우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분쟁이 구체화되었을 때에도 남극조약만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존재한다.⁵¹⁾ 이 경우, 남극조약을 보완하여 UNCLOS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를 포함하여 남극조약과 UNCLOS와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UNCLOS와 남극조약체제의 관계

UNCLOS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세계 바다와 대양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즉 UNCLOS는 모든 해양 공간에 적용되는 글로벌 협약이므로 일반적으로 남극해에도 적용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협약과 양립 가능한 다른 협정으로 부터 발생하거나 또는 다른 당사국이 이 협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는 UNCLOS 규정은⁵²⁾ 남극조약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남극조약의 목적상 남극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으로 정의되며 상당한 범위의 해양 공간을 포함한다.⁵³⁾ 해양 공간은 UNCLOS에 따라 크게 i) 국가 주권 또는 연안 국가의 관할 구역, ii) 그 지역 너머의 공해, iii) 국가 주권 또는 관할권의 한계를 벗어난 심해저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구역이 UNCLOS상 남극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다.

첫째, 국가주권 또는 관할권에 속하는 구역에 관한 UNCLOS에 명시된 체제가 남극에 적용되는지는 남극 대륙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남극해에는 여러 국가의 명백한 주권이 적용되는 섬들이 있다. UNCLOS는 그러한 섬들에 적용된다. 영해와 이들 섬 주변의 대륙붕에 관한 법률은 관련 국가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어떤 경우에는 최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또는 어업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 남극과 관련하여 남극조약의 7개 당사국은 대륙 일부에 대한 영토 주권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주장 중 일부는 중복된다. 남극조약은 이러한 상충되는 입장을 처리하기 위해 제4조에서 조약이 발효되는 동안 남극의 영토 주권에 대한 새로운 주장이나 기존 주장의 확대를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⁵⁴⁾ 남극조약 당사국의 관점에서 볼 때, 남극에서 청구국이 다

양한 유형의 해양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는 남극조약 제4조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달려 있다. 남극 대륙에서 영토 주권을 주장한 국가들은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영토에 대한 소유권이 주변 수역과 대륙붕에 대한 관할권을 자동으로 포함한다는 근거로 인접 수역에 대한 해양 관할권 주장하였다. 한편, 비청구국은 남극 대륙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들 국가 중 다수는 자원에 대한 주권의 특정 주장이 새로운 주장 또는 영토 주권에 대한 기존 주장의 확장을 구성하므로 남극 조약 제4조 2항에 의해 금지된다고 주장한다.⁵⁵⁾ 이러한 국가적 입장의 차이에 비추어 볼 때, 국가 주권 및 관할권에 관한 UNCLOS의 규정이 남극조약의 관련 분야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해에 관한 UNCLOS의 규정은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의 내수, 영해, 및 군도 국가의 군도 수역에 포함되지 않는 바다의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공해에서 모든 국가는 특히 항해 및 항공 비행의 자유,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을 부설하고 인공섬 및 기타 시설을 건설할 자유, 어업 및 과학 연구의 자유를 향유한다.⁵⁶⁾ 공해에 관한 UNCLOS의 일반 규칙은 남극해의 공해 지역에 적용된다.

셋째, UNCLOS 체제는 1994년 11부의 이행을 위한 협정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심해저 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규율하는 원칙과 규칙을 제시하게 된다. 심해저를 통치하는 체제는 완전히 새로운 법적 틀이자 논쟁의 여지가 있는 체제였으며, 적어도 초기에는 미국이 조약 비준을 거부한 원인이 되었다.⁵⁷⁾ UNCLOS의 심해저 조항은 '인류 공동 유산'이라는 법적 개념에 근거하는 한 이론적으로 남극 대륙과 관련이 있다.⁵⁸⁾ 어느 한 국가도 심해저나 그 광물 자원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주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부분도 차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심해저의 활동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ISA에 의해 통제된다. 또한, 1988년 채택된 남극광물자원활동규율에관한협약은 비록 미발효 상태이지만 남극 대륙과 남극의 모든 섬과 인접 근해 지역의 해저 및 하층토에서의 광물 자원 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⁵⁹⁾ '심해저'라는 용어는 국제법에 따

46) 김민경, Supra note 32, p. 236.

47)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전략", 전략지역심층연구 14-11,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pp. 84-95; 김민경, Supra note 32, p. 237: 해당 논문에서 '아시아-태평양 북극지역위원회' 발족시에는 북극권 국가인 러시아와 미국, 아시아-태평양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이 주요 참가국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들 국가들이 북극에 대한 국제법규범체계의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48) Supra note 2.

49) Ibid.

50) Ibid.

51) Argentina-United Kingdom Falkland War, 1982, <https://www.britannica.com/event/Falkland-Islands-War> 참조, 2022. 7. 19. 방문.

52) 유엔해양법협약 제31조 제2항.

53) 남극조약 제6조.

54) 남극조약 제4조.

55) UNCLOS versus the Antarctic Treaty, [unclos_versus_the_antarctic_treaty.pdf](#) 참조, 2022. 8. 3. 방문.

56) 유엔해양법협약 제87조.

57) L. Malone, "The Waters of Antarctica: Do They Belong to Some States, No States, or All States", 43 Wm. & Mary Envtl. Law and Policy Review 53(2018), pp. 53-81.

58) Ibid. p.65: 일찍이 1968년 유엔 총회는 해저, 해저 및 그 자원을 '인류 공동 유산'으로 선언한다는 개념을 승인한 바 있다.

59)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 Activities, Wellington, New Zealand, 1988, 외교부 남극관련 조약 및 법령 참조, 2022. 8. 1. 방문.

라 정의된 바와 같이 대륙붕의 지리적 범위를 넘어서 해저 및 하층토로 정의되는바, 남극광물자원활동 규율에 관한 협약에서 언급하는 대륙붕의 지리적 범위는 유엔해양법협약 76조에 구체화된 모든 기준과 규칙을 참조하여 결정된다. UNCLOS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국제협약들과의 관계를 배척하지 않는다. 따라서 남극조약 역시 남극해와 관련된 부분들은 UNCLOS의 규정들을 참조하다. 다만 UNCLOS에서는 남극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남극조약체제는 UNCLOS의 심해저와 유사하게 국가관할권 밖에 있는 생태계를 가능한 한 보호하려는 일반적인 이해관계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 환경에 대한 전면적

인 보호는 심해저와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남극조약은 기후변화와 같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남극 지역에 국한되고 남극조약에 따른 활동에 대한 의무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시 포괄적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는 UNCLOS의 접근방식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혹독하고 열악한 남극에 기후변화로 다양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남극조약체제와 UNCLOS를 상호보완하면 남극해 관련하여 많은 부분이 관련 규정 내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유엔해양법 협약은 지구사회의 해양문제를 다루는 헌법으로서 그 위치를 지키고 있다. 기본적으로 주권국가들의 관할권을 기초로 해서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권국가들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는 독특한 법적 이론과 실재를 해양법에서 만들어왔고, 북극과 남극, 즉 극지지역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되어 왔다.

극지지역에서는 최근에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해서 국가 관할권의 기초가 되는 영역의 범위 또는 남극조약과 같은 기존의 조약의 적용 변화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기후변화는 기본적으로 국가는 물론이고 다양한 행위자가 모두 '협력'하여 지구사회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극지지역에서 존재하는 연안국가들의 끊임없는 배타적 관할권 확대에 대한 의지를 최대한 자제시킬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 질 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의 일부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UNCLOS가 극지 문제를 다루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만, 해양문제로서 극지문제를 본다면, 비록 주권국가 중심의 법질서와 표준을 만들어 놓은 UNCLOS이기는 하지만, UNCLOS를 무시한 극지문제를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다. 이러한 점은

특히 북극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설득력이 있게 들릴 것이다. 남극지역의 경우에는 국가 관할권 행사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남극조약으로 인해서 UNCLOS의 역할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양문제로서 극지문제를 주권국가의 측면에서 다룬다면 여전히 UNCLOS를 중심으로 관련 체제들을 보완하여 나가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같이 주권국가를 넘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과학적 연구와 조사가 자유롭게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와 같은 다른 측면에서 극지를 다루고 있는 체제들과의 조화 또는 규범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재 지구사회에는 극지문제에 대해서 UNCLOS와 기후변화 협약 체제 간의 규범적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특히 비국가 행위자의 역할이 중요한 기후변화 문제는 이러한 플랫폼의 부존재가 더욱 심각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UNCLOS 채택 4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극지문제에 관한 해양문제의 헌법으로서 UNCLOS가 극지를 다루는 다른 체제들과 조화를 통한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석환, 나희승, 박영민, "한국의 북극 거버넌스 구축 및 참여 전략", 전략지역심층연구 14-11,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 김민경, "북극해에 대한 국제법적 규율: 북극해의 이용과 환경보호 및 보전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 해외문헌

-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2011.
- Agreement on Cooperation on Marine Oil Pollution Preparedness and Response in the Arctic, 2013
- Agreement on Enhancing 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operation, 2017.
- Bellinger, John B. "The United States and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Institute for Legal Research: Berkeley, CA, 2008, p. 12.
- Bunker, Wayne M. U.S. Arctic Policy: Climate Change, UNCLOS and Strategic Opportunity . U.S. Army War College: Carlisle, PA, March 22, 2012, p. 24.
- Catherine Redgwell, 'Treaty Evolution, Adaptation and Change: Is the LOSC 'enough' to Address Climate Change Impacts on the Marine Environ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arine and Coastal Law, Volume 34, Issue 3, 2019, pp. 440-457.
- Carlson, Jon D., Christopher Hubach, Joseph Long, Kellen Minter, and Shane Young. "Scramble for the Arctic: Layered Sovereignty, UNCLOS, and Competing Maritime Territorial Claims." SAIS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3, No. 2, Summer-Fall 2013, pp. 21-43.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rctic Imperatives Reinforcing U.S. Strategy on America's Fourth Coast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ashington, D.C., March 2017, p. 84.
- Georgetown Security Studies Review: UNCLOS in the Arctic: A treaty for Warmer Waters
- L. Malone, "The Waters of Antarctica: Do They Belong to Some States, No States, or All States", 43 Wm. & Mary Env'tl. Law and Policy Review 53(2018), pp. 53-81.
- Meinhard Doelle, "Climate Change and the Use of the Dispute Settlement Regime of the Law of the Sea Convention",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2006, pp. 25-27.
- Natalie Klein, "Adapting UNCLOS Dispute Settlement to address Climate Change", in Research Handbook on Climate Change, Oceans and Coasts, Research Handbooks in Climate Law series, 2020.
- P. Birnie and A. Boyle, "International Law and the Environment",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02, p.348.
- Rice, Kristen. "Freezing to Heat the Future: Streamlining the Planning and Monitoring of Arctic Hydrocarbon Development." Colorado Natural Resources, Energy & Environmental Law Review. Vol. 24, No. 2, Summer 2013, pp. 391-418.

- Wilder, Meagan P. "Who Gets the Oil?: Arctic Energy Exploration in Uncertain Waters and the Need for Universal Ratific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2, No. 2 (2009-2010):505-544.

3. 기타 자료

- "Discovering Antarctica" <https://discoveringantarctica.org.uk/challenges/sustainability/impacts-of-climate-change/> (검색일: 2022.7.15.).
- "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Arctic Council, Ottawa, Canada, 1996," https://www.international.gc.ca/world-monde/international_relations-relations_internationales/arctic-arctique/declaration_ac-declaration_ca.aspx?lang=eng (검색일: 2022.8.1.).
- "북극 자원개발 현황과 과제는?" <https://www.energ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22> (검색일: 2022.8.1.).
- "The Ilulissat Declaration, Arctic Ocean Conference, Ilulissat, Greenland, 2008" <https://arcticportal.org/images/stories/pdf/Ilulissat-declaration.pdf> (검색일: 2022.8.1.).
- "Argentina-United Kingdom Falkland War,1982" <https://www.britannica.com/event/Falkland-Islands-War> (검색일: 2022.7.19.).
- "UNCLOS versus the Antarctic Treaty, unclos_versus_the_antarctic_treaty.pdf" (검색일: 2022.8.3.).
-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 Activities, Wellington, New Zealand, 1988, 외교부 남극관련 조약 및 법령" (검색일: 2022.8.1.).